

#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1일
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  
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춘곤, 박영한,  
박철성, 서상열, 소영철,  
송경택, 이민석, 이성배,  
이영실, 이은림, 이종태,  
최민규, 최유희, 황철규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·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·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 
「지방재정법」  
「공인중개사법」  
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
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 「 공인중개사법」 ”을 “ 「공인중개사법」 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중개보수료의 제작·지원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료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중개보수) ① 「<u>공인중개사법</u>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(이하 “중개보수“라 한다)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) ① <u>시장</u>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,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중개보수) ① 「<u>공인중개사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) ① <u>서울특별시</u>장(이하 “<u>시장</u>“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중개보수표의 <u>제작·지원</u>) <u>시장</u>은 <u>법령</u>이나 <u>조례</u>의 개정 에 따라 <u>중개보수</u>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<u>중개보수표</u>를 <u>제작</u>하여 <u>공인중개사</u> 등을 대 상으로 <u>배포</u>할 수 있다.</p>

문서번호

2022093000000002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박성연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2.09.30.

회신일 : 2022.10.0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###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중개보수표의 제작·지원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60,000천원(연평균 12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0,000천원으로 연평균 12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 - 중개보수표 제작·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
  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60,000천원(연평균 1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 계
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중개보수표 제작·지원 비용 (제5조)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	소계(b)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총비용(b-a)	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
○ 중개보수표 제작·지원 ≙ 60,000천원

- 중개보수표 제작·지원 비용

= 12,000천원 × 5회

※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비용 준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